

기 안 용 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시설30312-11	(전화번호 731-6346)	전 결 기 정 4 조 1 항 국 장 전 결 사항
처리기간	시 장		
시행일자	결재 1985. 9. 26 도시계획국장		
보존연한	영구		
보조기관	도시계획국장 권결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	9. 26 고사제 643	법무담당관 심사결
기안책임자	조근호	85. 9 (김음덕)	1985. 9. 27
경유	각안참조		발신
수신			1985. 9. 27
참조			
제목	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 제1안 내부결재		
<p>1. 강등구정장으로 부러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 시설(시장) 결정 요청이 있어 우리시 제3차 도시계획 위원회 소위원회(85. 9. 17)에 상정심의 가결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.</p>			
첨부: 관계서류 1건			
제2안 고시안			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			
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 고시			
<p>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여 이를 고시한다</p>			
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동구청 도시 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9.

서울특별시청

◦ 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모(㎡)	비고
신설	시장	강동구 명일동 347-3외1필지	1406.2	-

◦ 결정 도면: 별첨 도면 중 A와 같음 (도면영략)

제3안

수신: 건설부 장관

참조: 도시시설계획과장

제목: 같 음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기 보고합니다

첨부: 고시문 4본 및 도면 1부

제4안

수신: 총무처 장관(시: 홍보관) 발송: 시(국)장

제목: 관(시)보 게재 의뢰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결정되었기 관(시)보 게재 의뢰 합니다.

가. 게재구분: 고시

나. 게재건명: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 고시

다. 법적근거: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

제6조

라. 게재내용: 별첨

첨부: 고시문 사본 2(1) 부

제5안

수신: 강동구청장

참조: 도시정비과장

제목: 같 음

1. 귀구 관내 도시계획시설(시장)이 별첨과 같이 결정되었기 통보하시 도면 정리 및 관계과에 통보하여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

2.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승인 고시률이 캄라고 타법이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허가 전에 절차를 이행하고 시행토록 할 것

첨부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

제6안

수신: 수신처 참조

제목: 같 음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별첨과 같이 결정 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

첨부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

수신처: 도시계획과장 상공과장 끝



천로동

천로동

경성

결정지
(1406.2M²)

고덕리

태지개발예정지구

서울시교육청

명동



시설기획과장 : ...의 타당합니까?
 시설기획과장 : ...입니다.
 감사담당관 : ...부분은 적확하고 나머지는 결정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?
 시설기획과장 : ...분야가 안전지대는 생각하는것이 긍정적인
 육원장 : ...분야는 시설이 아닌 공간을 적확한 부분만 타당으로 결정
 ...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?
 일 등 : 동의 (수정가결)

제15안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결정

0 강서구 내발산동 19 11일당

가결

시설기획과장 : ...건설경 (삼이안에 의함)
 감사담당관 : 누구초직입니까?
 시설기획과장 :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산하조직소유토지입니다.
 육원장 : 연구시설로 결정되면 토지수용이 됩니까?
 시설기획과장 : 토지소유에 의하면 수용할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.
 김인식위원 : 자연녹지지역에 연구시설을 건립키위한 것입니다.
 육원장 :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누가에서 설명했습니까?
 시설기획과장 : 총무과장이 설명했습니다.
 육원장 : 재인사유중 '86, '88 올림픽을 대비키 위해 본 연구시설이 필요
 하다는 것은 타당성이 적은것 같으나 새마을운동을 연구 훈련키위한
 시설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게 어떻겠습니까?
 일 등 : 동의 (가결)

제21안 도시계획시설 (시장)결정

0 강동구 명일동 347-3외 1필지

가결

1985. 3. 14
도시계획국

위원장 (심의안에 의함)
위원장은 이 사업은 시장용이 아닐 생각인데 부른 토지도 포함시킬
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을지라도 생각상 부른 토지는
주요사업지구내의 토지로 이미 다른 건물에 지어진 상태이며
현재는 구역상 부합 구역내 토지입니다.

결정사항 위원장 : 유즈용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고루적입니다.

위원장 : 몇명입니까?

시설계획과장 : 400명 정도 됩니다.

위원장 : 인원은 없습니까?

시설계획과장 : 없습니다.

위원장 :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지요

일 동 : 동의 (가결)

제27안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 설비) 변경 결정

0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감일리 산6 가결

- 강남구 서초동 282

0 경기도 광천면 감현리 - 강남구 서초동 282 가결

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 (심의안에 의함)

지난 본회의에서 대청마을 주변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
의견이 있었을지라도 그 지역은 토지개발공사 사업지구로 토지
개발공사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요청이 없어서 본안에서는 제외 된 것
으로 알고 있습니다.

위원장 : 토지개발공사는 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?

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년 월 일	1985. (제 회)

의결사항

도시계획시설 (시장) 결정 ~~및 변경~~ 결정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

제 출 자	서울특별시 장
제출년월일	1985.



1. 의결주문

- 당시 도시계획시설 (시장)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- 도시계획시설 (시 · 장)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 (M ²)	비 고
신설	시 장	강동구 명일동347-3 외 1필지	1406.2	

2. 제안이유 (입안취지)

- 주변이 아파트지역으로 일반주택 신속으로 상주인구가 증가하고있는 지역에 시장이없어 주민의 구매 편의를 위하여 근대적인 시장을 신설코자함.

3. 기 타

- 80. 12. 19 환지처분완료 .

도시계획위원회	
정 수	경 유

과 장	과 장	부 서 장	장
30	전 결		施

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상정안

1. 안건명 : 도시계획시설(시장)결정

2. 내용 (위치, 규모, 내용, 기타)

구 분	시설명	위 치	면적(M ²)	비 고
신 설	시 장	강동구 명일동 347-3외 1필지	1406.2	

3. 현재의 도시계획 상황

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

4. 상정사유

· 주변의 아파트 지역과 일반주택신축으로 급속히 상주인구가 증가하고있는지 역에 시장이없어 주민의 구매 편의를 위하여 시장을 신설코자함.

5.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등 관련법규 검토사항

· 80. 12. 19 환지 처분완료

6. 기타 (도시계획법 제 68 조에 의한 참석자 인적사항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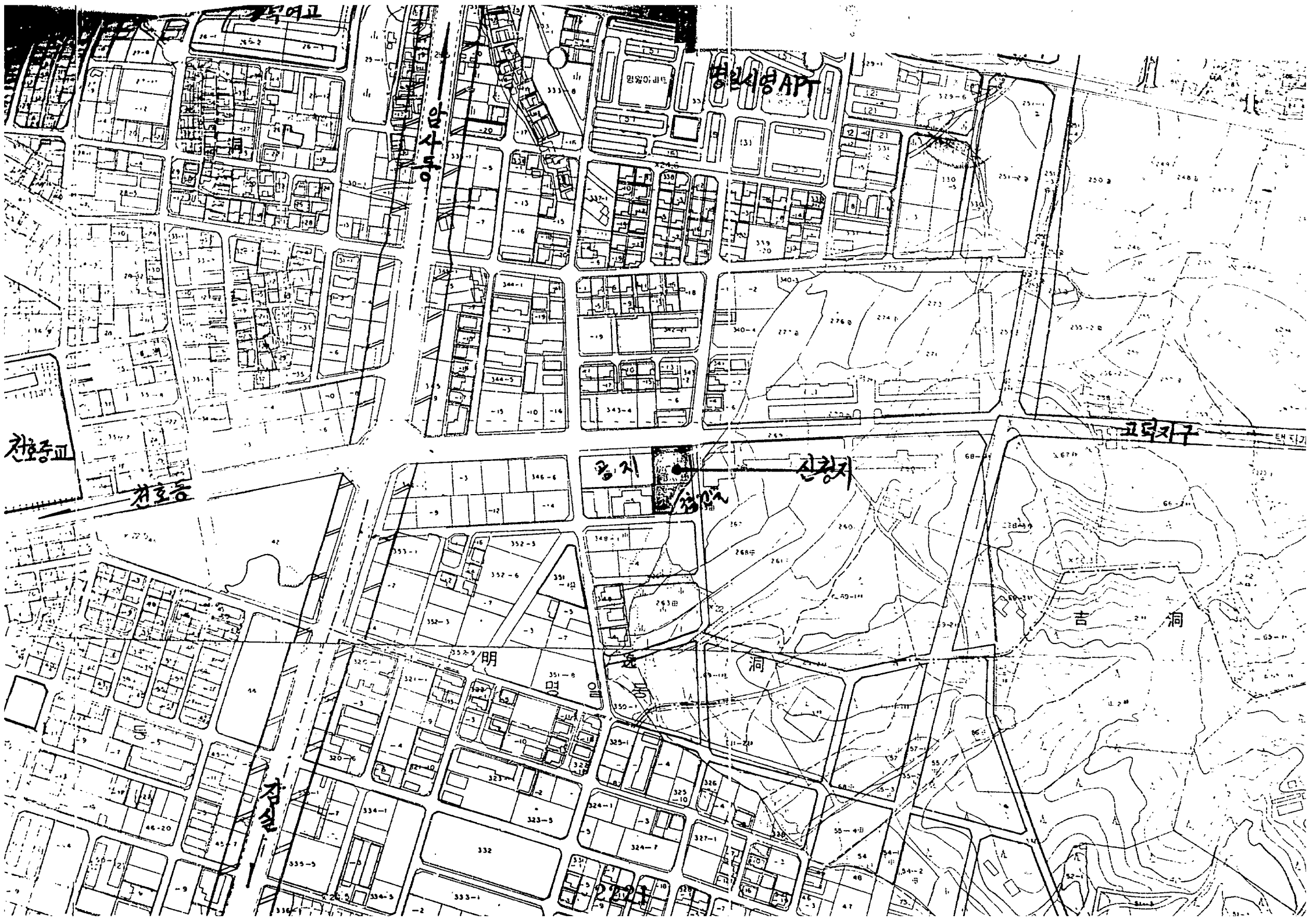
· 구정장 요점사항

첨부 : 1. 위치도 (1/5,000 - 1/25,000)

2. 상세도 (1/1,200 - 1/ 3,000)

3. 관련서류 (법규 또는 방침서)

4. 실의안



천호동

천호동

신안로

명신성 APT

공지

신림지

고덕지구

김호동

明

洞

도시계획시설 (시 장) 결정요청 검토보고

1. 요청사항

- 위치 ; 강동구 명일동 347-3외 1필지
- 면적 ; 1406.2M²
- 요청자 ; 현대종합쇼핑 이용희
- 요청내용 ; 주변이 아파트 지역과 일반주택 신축으로 급속히 상주인구가 증가하고있는 지역에 시장이없어 주민의 구매편의를 위하여 근대적인 시장을 신설코자함,

2. 요청내용

- 도시계획상황 ; 주거지역, 주차장정비지구
- 건축계획 ; 연면적 3932 M²(지하1층, 지상8층)

3. 검토사항

- 주거지역내 시장결정가능
- 신개발지역으로 2KM 정도 떨어진 천호시장을 이용
- 80. 12.19 환지처분 완료

4. 조치의견

차기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심의